



국가인증마크(KC) 통합

중복인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은 하나의 인증마크만을 확인하여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표준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정부적 국가표준인증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13개 법정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

국가표준인증 종합관리시스템의 핵심내용은 첫째, 20개 유형의 법정강제인증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ISO/IEC Guide 67)과 부합화시켜 국내실정에 맞도록 9개 유형으로 간소화하고, 둘째,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하는 것이다.

〈개정시 기존 인증제도와 차이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도 운영 부서	환경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	변경 사항 없음	단, 제품인증제도 도입시 지경부장관과 협의
인증 대상	각 개별법에서 정한 제품인증품목	변경 사항 없음	
인증 기관	각 개별법에서 정한 인증기관	변경 사항 없음	
인증 마크	 등 개별 인증마크 사용	 인증마크로 통합하여 사용	2011.1.1일부터 사용. 단, '11.1.1~'12.12.31 까지 병용 사용 가능
심사 절차	각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심사 (20개 유형)	9개 유형의 표준인증심사절차 중 선택하여 심사	
인증 심사원	각 개별법에서 요건을 정한 심사원	변경 사항 없음	
기대 효과		기업 부담 경감, 소비자혼란 방지 및 글로벌 브랜드 육성	부가적으로 중복시험생략 및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가능
필요 조치	-	2009.7.1시행 전후로 대대적인 홍보	

KC마크 도입에 따라 인증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중복인증 해소로 기업에게는 인증비용 절감(38백만원 → 13백만원)과 소요기간 단축(5.5월 → 4월)으로 7조3천억원의 매출액이 증가되고 6만8천여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려대, '08년 자료)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붙어 있는 다양한 인증마크로 인한 혼란을 없앨 수 있고, 양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제품 선택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의 주요 개정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새로이 제품에 대한 인증·검정 등을 거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인증 평가·심사의 국제부합성을 제고하였다.

표준인증심사제 도입으로 국제부합성 제고

둘째,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는 '09.7.1부터 9개 인증제도에 우선 도입하고, '11.1.1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다.

셋째, 법령을 제·개정하여 신규로 제품인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인증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난립을 방지하고 인증간 조화를 꾀하도록 하였다.

넷째,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함으로써 동 심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표준심의회 밑에 실무위원회(위원장 : 기술표준원장, 위원 : 각 부처 국장)를 두도록 하여 상시 부처간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통보, 협의, 통합마크, 표준인증심사제 적용사례〉

구분	내용	통보 (법22조)	협의 (법22조단서)	국가통합인증마크(법22조의3)		표준인증심사제 (법22조의2)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법정 인증	강제 - 국민안전확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인증취득없이 생산·유통 불가	의무 이행	의무 이행	의무 이행	해당없음 *단, 도입시 의무이행	의무 적용
	임의 - 정책목적달성 위해 법에 의해 시행 - 인증취득시 인센티브 제공	의무 이행	자율 시행	해당없음	해당없음	자율 시행
민간 인증	- 자체 수익사업 일환 - 민간자율시행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법22조 : 제품인증등의 제도를 도입할 때 지경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법22조단서 : 법령 제·개정하여 제품 인증등을 받든지 거치거나 인증등의 마크를 표시하려면 지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KC마크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기본법 등 9개 부처 27개 법령의 개정, 복수 인증 품목 공동인증처리절차 규정 제정, 법정 임의인증제도간 중복시험항목 상호의제 등의 제도 정비를 '10.12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국가인증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며, KC마크 도입과 이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중복인증에 의한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기술개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KC마크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인증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인증산업을 수익창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육성

기술표준원은 KC 마크를 10대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국내 인증산업을 수익창출형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의 CE, 중국의 CCC, 일본의 PS 등과 같이 KC마크를 국제적 브랜드로 육성하여 국내 인증산업을 해외로 수출할 수 계기를 마련한다.

한편, KC마크 및 표준인증심사제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에서는 세계 표준

의 날 등 주요행사, TV·지하철 홍보, 지방순회설명회, 정부·인증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On-Off 홍보망을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표준기본법의 주요 개정 공포 내용을 보면, 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제22조의2)은 제품에 대한 인증·검정 등을 거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제22조의3)이란 인증제품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국제협약 또는 국가가 협정 준수를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 제외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두는 것이다.

인증마크 도입시 지경부 장관과 협의

제품인증제도 및 인증마크 도입시 지경부 장관과 협의(제22조 단서조항)란 법령을 제·개정하여 제품 인증을 거치거나 인증마크를 표시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표준인증심사제·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부칙 제2조)이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1.1.1일부터 표준인증심사제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부칙에 두는 것이다.

국가표준심의회를 지식경제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제5조)이란 국가표준심의회 의장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위원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국가 표준 인증제도 개선 세부 이행계획을 보면, 추진 배경으로 부처별 다양한 인증제도가 소비자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법정 강제 39개, 법정임의 59개, 민간인증 60개 등 158개의 인증제도 운용 중이다. 중소기업당 평균 3.3개의 인증취득, 중복인증 해소시 기업부담은 7,900억원 감소된다.

인증제도 개선 필요성 꾸준히 제기

국회, 언론 등에서 표준·인증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표준·인증제도 개선의 추진이 요청된다.

〈인증제도의 분류〉

구 분	내 용
법정 인증	강제 국민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공산품안전인증 등 9개 부처 39개 인증) * 인증 취득 없이는 생산·유통이 불가능
	임의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에 의해 시행하는 인증(환경마크 등 17개 부처 59개 인증) * 우선구매,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증 미취득시 사실상 시장진입이 곤란 (준강제 인증)
민간인증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 자율 시행 (Q마크 등 60개 인증)

국내 인증·시험시장 규모는 160여개 인증제도 운용, 인증·시험시장은 약 3.7조원 규모이고, 730여개 인증·시험기관에 약 1만2천여 명의 심사인력 중

사한다. 인증취득업체수는 20만여 업체, 인증취득건수는 210만여 건이다.

국내 인증시장 규모 급속히 확대

국내 인증시장 추세는 '90년대 ISO 9000 출현 이후 인증제도는 “인증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다양화되었다. 품질, 보건·환경, 안전, 에너지, 신기술, 서비스·디자인 등 전문화, 세분화 양상이다.

구 분	'60~'69	'70~'79	'80~'89	'90~'99	'00~'07	총계
인증신설 수	4개	8개	5개	43개	38개	98개

기대효과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비용에서 인증취득 비용은 기업당 65.8% 절감(38백만원 → 13백만원)되고, 기간에서 인증취득 소요 기간은 26.7%(5.5월 → 4월) 단축된다. 매출(7조3천억원) 및 생산(13조4천억원) 증가, 취업(85천명) 및 고용(68천명) 유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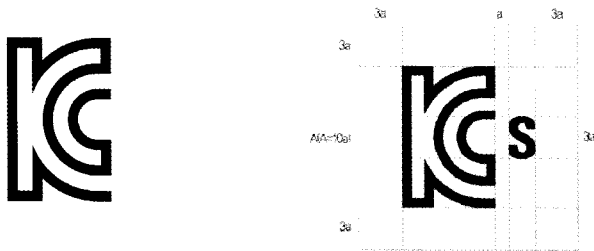
소비자 편익 증진과 예산절감효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및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사례로서 국방규격(3,200여종)의 국가표준과 통일화 추진으로 연간 279억원 예산절감이 된다. 인증 관련 산업을 수익 창출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한다. 세계 인증시장은 연평균 10%성장, 65조원('07년) → 85조원('09년)이 될 것이다.

5개 부처 13개의 법정 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인증마크는 지식경제부(9), 노동부(1),

환경부(1), 방송통신위원회(1), 소방방재청(1) 등이다.
 해외사례는 EC(CE), 중국(CCC), 일본(PS), 대만(CI
 마크)를 들 수 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KC : Korea Certification)에
 서 K와 C를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함으로써 국제적
 통합을 강조하고 워드타입을 심볼형태로 형상화하여
 인증마크로서의 시각적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 인증분야 부가표가 안전(S), 품질(Q), 환경(E), 보건(H)

“

국가표준인증 종합관리시스템의 핵심내용은
 첫째, 20개 유형의 법정강제인증의 인증심사절차를
 국제기준(ISO/IEC Guide 67)과 부합화시켜
 국내실정에 맞도록 9개 유형으로 간소화하고,
 둘째, 기존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는 KC마크로
 통합하는 것이다.

”

